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6일,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나무심기, 숲가꾸기와 같은 순환경영으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임도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안전진단 및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도의 설치·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개설된 임도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람의 통행 및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임도사업 정보의 수집·분석, 민간 협력, 제도 연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과 임도 관련 기술연구·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도기술을 발전시키고 임도의 파손·피해를 입힌 경우에 벌칙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여 임도의 보호와 산림 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현재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일부 조항에만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관리되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임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목적의 「산림자원법」뿐만 아니라, 산불의 예방·진화 및 산림보호 목적의 「산림보호법」, 지역균형발전 도모 목적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음.

또한, 「산림자원법」에 따른 조림, 숲가꾸기 등의 사업과 토목·시설의 설치 등 임도의 사업이 그 성격이 다르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법」에서 분법하여 독립적으로 임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제정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임.

농업 분야는 이미 농업 활동의 기반시설인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등을 위해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제정(1991.12.14.)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임업 분야에 있어서 임업 활동의 기반시설인 임

도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임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1968년부터 설치가 시작된 임도는 2024년말 현재 26,785km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전국 단위의 기본계획인 ‘전국임도기본계획’이 현재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년, 10개년 계획)까지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음.

하지만, 기본계획의 근거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세부 규정들이 산림청 훈령(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임도설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임도계획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며, 임도설치 이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유지·관리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